

## 고용노동부, 코로나19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

### 1.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

- 지원대상 :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·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「감염병 예방법」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- 신청방법 : 격리해제일(퇴원일)이후~별도 공지시까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
- 지원금액 : 격리기간 중의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(일 최대13만원)
- 신청 및 문의 : 국민연금 콜센터 133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
### 2.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

- 지원대상 :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지원
- 지원내용 : 월 50만원×3개월
- 지원요건
  - 특별업종 : 유급휴업 실시하지 않고 바로 무급휴직 실시 가능
  - 일반업종 :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1개월 이상 실시
- 문의 : 고용보험 홈페이지 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,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

### 3. 고용안정 협약지원금

- 지원자격 :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사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고용유지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
- 지원내용 : 1인당 최대 50만원(임금감소분의 50%, 최대6개월)
- 지원대상 : 고용유지조치한 사업주(근로자 지원용으로 사용)
- 신청 :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
- 문의 :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

### 《코로나19에 대처하는 사업장 방역 지침》

- 유연근무 및 휴가제도 적극 활용
  - 공공기관은 자체 인원의 1/2을 유연근무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제) 권고
  - 민간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극 활용
  - 특히,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, 휴가 등 적극 활용
- 회의·교육은 가급적 영상으로 진행
- 출퇴근시 발열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
  - 회사 사규(취업규칙 등)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,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,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
- 사무공간의 밀집을 최소화하고(간격 1m이상) 구내식당·휴게실 방역 관리 철저
  - 밀집사업장(콜센터 등)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